

PL에서 민법규정의 적용

우리나라의제조물책임법은전문8개조와부칙2개항으로되어 있는데, 제8조는민법규정의적용에관하여언급하고있다.

제8조(민법의적용)

“ 제조물의결함에의한손해배상책임에관해이 법에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민법의규정에의한다.”

PL법 제8조는PL법이민법의특별법으로서제정되었음을확인할수있는조항이다. PL법은민법의특칙이며, 따라서규정해야할몇 가지를조문으로규정해놓고기타법적현상은민법의조항을적용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여기서민법의조항내지는해석을참조해야할 것이다.

첫째, 과실상계의원칙이다. 민법제조의과실상계의원칙은불법행위에도원용되며PL법에도준용이 가능하다. 과실(過失)이란뜻이나치름, 과오, 실착(失錯)이다. 법률에서 어떤 사실을인식할수 있었음에도부주의로말미암아인식하치않은일이다.

사법상, 일정한사실을인지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부주의로인식하지못한 것으로, 고의(故意)에대립되는의미이다. 그리고형법상으로는과실은책

임조건의하나이며, 고의에 비하여비난의정도가비교적낮은 것으로 과실에 의한행위는 법률에 특별한규정이 있는경우에 한하여 처벌된다.

과실상계(過失相計)는해를입은 사람에게게도과실이있을경우, 손해배상의정도와범위를줄이는일이다. 즉채무불이행또는불법행위로인하여손해배상책임이발생할경우에있어서적용하는조항이다. 배상원인의성립또는손해의발생에관하여, 채권자또는피해자의과실이있는때에, 법원이배상책임의유무및 배상액을정함에있어서그 정도및 범위를참작하는것이다. 민법제396조와 제763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신의성실의원칙의요구에기(基)하는법리이다.

둘째, 금전배상의원칙인데, 민법제394조의금전배상의원칙이PL법에도적용된다.

금전(金錢)이란재화의교환의매개물로국가가정한물건을말한다. 강제통용력을가지는화폐뿐만아니라, 거래상화폐로서통용되는자유통화도포함하여 말하는일이 많다.

손해를금전으로평가하여그 금액을지급시킴으로



나 경 수
(사)전자정보인클럽법홍보이사
ksrha@esak.or.kr



써 이루어지는 손해배상이 금전배상(金錢賠償)인데, 원상회복에 대응하는 말이다. 금전배상으로 손해배상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삼는 입법주의를 금전배상주의라고 하는바, 우리민법이 주의에 입각하고 있는데 민법 제394조와 제763조에 규정되어 있다.

셋째, 공공양속(公共良俗)에 관한 규정으로,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權利濫用)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칭한다.

모든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체(社會共同生活體)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faithfully) 행동할 것이 요구된다. 이는 리적 규범을 법률에 있어서 존중하여 법률관계에 적당하게 하여야 한다고 할 때 이것을 법률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 한다.

이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함께 법과 도덕의 조화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관념인데, 후자는 질서와 도덕이라고 하는 객관적이고 사회일반적 입장을 주로 한다. 이에 대하여, 전자는 당사자의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라고 하는 주관적이고 개별적 입장을 주로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때에는 동시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된다. 그리고 권리남용에 의한 불법행위의 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서 책임을 발생시키는 것과 같이 양자는 결국 동일한 것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과 같이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검토할 때에는 권리의 공공성이나 사회성에 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권리라는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인정될 수 없는 행위가 권리남용(權利濫用)인데 민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물건 또는 사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당해의 직업 또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가 '선량(善良)한 관리자(管理者)의 주의(主意)'이다. 선관주의라고도 칭하는데 주의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과실 또는 추상적 경과실이라 한다.

'선량(善良)한 풍속(風俗) 기타 사회질서(社會秩序)'는 엄밀하게 말하면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을 말한다. 선량한 풍속과 국가 사회의 일반적이익을 사회질서라고 할 수 있지만, 양자는 그 내용이니 범위가 대부분에 있어서 일치하고 이튼 상으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민법은 사회질서를 중심 개념으로 정초(定礎)시키고, 선량한 풍속은 그 한 모습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 제3조에 나타나 있다.

결국, 사회질서(social order)라 함은 '공정하게 사유하는 평균인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승인하는바, 환연하면 사회적 타당성 내지는 사회성(nature for social life)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법률은 결국 그에 있어서 사회질서와 융합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첫째는 사인(私人)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시인되기 위하여서는 그 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즉, 민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개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있다. 또 사회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게 되고, 권리의 행사도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는 권리남용으로 된다.

그 밖에 자력구제(自力求濟)라고 하는 자구행위(自救行爲)나 자기 또는 강박등 사법상의 행위가 위법이나 아니냐가 문제될 경우에 그 위법성 여부를



결정하는바로메타는결국에있어서는이를 사회질서에서구하게된다. 또 **행위**의위법성의성립도실질에있어서는그 행위가사회질서에반(反)하는것을실질적요건으로하~~고~~다.

둘째는법률규범의내용이사회질서에위반할때에는 법으로서의효력이인정되지않는것이다. 그러한이 이론을더욱절저히한다면사회질서에반한다는이유로실정법으로서존재하는법규의효력을부인하게된다. 그런데이는다른 한편에있어서법적안정성(法的安定性)을~~해~~하고오~~해~~려사회질서를문란케할 우려가있다. 따라서법률에명문의규정이있는경우에는별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이 이론을과연 어떤범위내에서인정할것이나는법률해석론의중핵으로서다루어지는문제이다.

손해배상(損害賠償)은법률이규정하는일정한경우에 타인이입은 손해를전보(填補)하여손해가없는 것과같은상태로하는것을 말한다. 민법상손해배상의무를발생시키는원인으로서가장중요한것은 위법행위이다. 즉채무불이행과불법행위이지만, 일정한경우에손해를전보하는계약을원인으로하는일도있다.

또한 위법이라고할 만한행위가아니더라도형평(衡平)의원칙상손해배상외의무가과하여지는경우도적지않다. 배상되어~~야~~할손해의범위는손해배상책임을발생시키는원인인사실과인과관계가있는것에한정되는것은말할나위도없다.

그렇지만, 그범위를상당인과관계로서제한하는것이 지금까지의통설이다. 다만, 그손해는재산적손해에한하지않고정신적손해를포함하며, 또한적극손해뿐만아니라, 소극적손해~~도~~포함된다.

소극적손해(消極的損害)란을수 있었던새로운 재산의취득이방해된경우의손해를말한다. 전대로

인하여얻을수 있었던이익의상실등이그 예이다. 이는적극적손해에대립되는말인데, 손해배상에서는적극적· 소극적양손해가모두배상된다.

법률의규정에따라남이입은손해를미~~워~~손해가없는 것과같은 상태로 회복하는일이 손해배상(compensation for damages)인데, 이때손해배상은실손해(實損害)의전보를목적으~~로~~고있다.

그러나피해자로하여금그 이상의이익을취득하게 하는것은그 본지에반하므로손해를받는 것과동일한원인으로이익을얻는때에는그 이익을공제하는데, 이것이이른바손익상계이다.

손익상계(損益相界)는손해배상청구권자~~가~~손해를발생시킨것과동일한원인에의하여이익도얻을때에는손해로부터그 이익을공제한잔액을배상할손해로하는것이다. 상계라~~고~~ 하지만긴정한의미의상계는아니며, 엄밀히말해서이득공제라고해야~~할~~이다.

민법에서는이에 관한 명문규정이없지만, 손해배상의성질상당연히인정되어~~야~~하는것이다.

손해배상의방법은금전배상을원칙으로하고있다. 예외적으로원상회복이인정되는데, 민법제394조, 제763조, 제764조에규정되어있다.

그리고위자료(慰籍料consolation money)는정신적손해에대한 배상금이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정조등의 침해로부터발생하는손해의배상인것이보통이다.

또 생명침해(生命侵害)는타인의생명을해하는것이다. 형법상으로는살인죄를구성하는한편, 민법상인격권의침해로서불법행위로간주된다. 불법행위에 기한손해배상청구권을~~가~~어떠한범위내에서취득하느냐에관하여는이 견이분분하고문제도많다.

우선사망한본인이취득하여상속인에 계승계되는것으로는, 적극적손해의배상과소극적손해의배상



이 있다. 그런데 이밖에 위자료 청구도 승계된다고 볼 것이냐가 다투어지고 있다. 다수설은 당연히 승계한다고 한다. 그러나 전연인의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소수설도 있다.

피해자의 상속인등 근친자(近親者)가 원시적(原始的)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는, 적극적인 손해배상에 살해된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 타인의 권리에 함이 없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소위 원시취득(原始取得)을 계취득에 대응한다.

인과(因果: cause and effect)는 원인과 결과인데, 불교에서는 던져 한 일의 값(tribution)을 지칭한다. 철학에서 인과관계(因果關係: causal relation)란 물의 생성과 변화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의 연관이 있는 관계로, 목적인과 자연인과가 있다. 불교에서는 인과성(因果性)이라 하여 인연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법률에서 인과관계(因果關係)를 일정한 선행사실이 없었더라면 다른 일정한 후행사실도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말한다. 민법상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논할 경우와 형법상 구성요건이 일

정한 결과의 발생을 요구하고 있는 결과범(結果犯: Erfolgdelikt)에 대하여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說)은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의 하나이다. 어떤 사실과 어떤 결과와의 사이에 조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우리의 경험적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만 법률이 요구하는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설이다.

이 설에서도, 그러한 사실'이라는 기초가 될 사실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관하여 다시 여러 가지의 설이 나누어진다. 즉, 주관설이 있는데, 행위시에 행위자가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을 기초로 하자는 설이다.

또 객관설이 있는데, 재판시에 있어서 행위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한 모든 사정 및 행위 후의 사정이라도 예견가능(foreseeable)것을 모두 기초로 하자는 설이다. 마지막으로 객관설이 있는데 행위당시에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recognizable) 사정 및 행위자가 특히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을 기초로 하자는 설이다.

| 기술표준 2007. 4

